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 719 호    2009. 10. 1.(목)**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1017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2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1018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4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1019호 인천광역시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7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1020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9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1021호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15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1022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18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규칙 제729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22

회 람									
--------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기획홍보실 [032-560-4140]**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09년 10월 1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017호

###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기금”을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로 한다.

제15조 중 “중·고등학생”을 “고등학생”으로 한다.

제23조제2호 중 “동법시행규칙”을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6조제4항 중 “각호의 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가정복지담당” 을 “노인복지담당” 으로 한다.

### 《인용법령 띄어쓰기와 낫표(「」)표기》

제2조제1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을 “「사회복지사업법」”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노인복지법” 을 “「노인복지법」” 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으로 하고, 제30조 중 “인천광역시서구기금관리기본조례” 를 “「인천광역시 서구 기금관리기본조례」”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09년 10월 1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018호

###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부터 제1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동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기능) ②대표협의체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③대표협의체는 민생안정지원협의회와 병기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제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2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조례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소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서비스과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 2명이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주민생활지원담당, 보건행정담당, 기초생활보장담당, 자활고용담당, 노인복지담당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⑥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두며, 분야별 실무분과장은 실무협의체위원으로 활동 할 수 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원의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은 위원의 사망, 질병, 품위손상, 불성실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09년 10월 1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019호

### 인천광역시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를 “인천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로 하며,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등에서” 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로 한다.

제2조 중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하 ” 법” 이라 한다)” 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로 한다.

다)” 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규정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연1회 이상 공중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 7. 1일부터 적용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09년 10월 1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020호

### 인천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차를 제외한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영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보관대"라 함은 자전거주차장·보도 또는 기타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여 자전거 보관에 이용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자전거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보살피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4. "자전거대여소"라 함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자전거이용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라 함은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과 자전거 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비영리민간단

체지원법」 제4조 규정에 의해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6. "주민자전거"라 함은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서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여건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5년마다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
2. 연도별 정비계획
3.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기타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할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공원, 하천,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자전거의 이용이 많은 장소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여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

③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의 권장에 의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자전거의 주차요금)**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별표”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구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여야 한다.

**제11조(주민자전거의 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자전거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는 민간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제12조(시범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보관소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전거타기 시범기관으로 학교를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 운영)**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주민홍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구청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일 이상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이동·보관·매각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5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구청장은 안전교육장을 설치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단체 등에 대해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 및 공무원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홍보물 등을 제작·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 자전거 주차장 요금표(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원/구획)

구 분	1회주차시 (1시간당)	1일주차권	월(정기권)
주차요금	200	1,000	15,000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09년 10월 1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021호

###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8조, 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을 장려·보호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구내 장애인의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 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 우수선수”란 국내 전국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자(단체경기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그 단체경기에 참가한 각 선수를 말한다)

또는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를 제외한다)에 파견된 자로서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6. “장애인체육 지도자”란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7.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장애인체육 단체,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공공 체육시설의 이용여건 마련
4.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외 교류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을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다.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 ①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10명 이상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

② 장애인체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규정된 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09년 10월 1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022호

###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거 지역 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 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란 법 제16조제11호에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 제2장 지역아동센터

**제4조(사업실행 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 등 법령에 의한 취학 아동의 방과 후 아동교육·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신고에 의하여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법 제2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
2. 지역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3. 한부모·조손·다문화 가정의 아동
4. 기타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기타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사업비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3. 센터 시설 및 운영비
4.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5. 센터 종사자 교육비

### 제3장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제8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업무담당 국장,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인
3.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4.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5. 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
6.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4.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5.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
6. 기타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해임·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기타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2조(위원회의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아동센터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여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09년 10월 1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729호

###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성적으로 하며, 중학교 신입생의 경우 초등학교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를 “성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6조 중 “중·고등학교별”을 “고등학교별”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